

칠곡군의회 공무원근로자 채용 공고

「칠곡군의회 공무원근로자(속기직) 공개채용 계획」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11월 일

칠곡군의회 의장

1. 채용 개요

채용분야	직종	담당직무	인원	근무부서
공무원 근로자	행정보조 (사무보조원)	· 각종 회의 녹취·속기 · 회의록/영상회의록 관리 · 기타 의사업무 보조	1명	칠곡군의회 (의회사무국)

2. 근로조건

● 주요업무

- 본 회의, 상임위원회 회의, 간담회 등 상시 녹취·청취·속기·기록
- 회의록 발간·관리 및 원고 열람·복사, 영상회의록 및 홈페이지 관리
- 기타 의사업무 보조 등

● 근로조건

- 보 수: 2019년 기준하여, 기본급 66,800원/일, 주휴수당/기타수당 지급, 4대보험 가입
※ 기타수당(상여금 포함)은 기관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
- 복 무: 「칠곡군 공무원근로자 관리 규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 - 근로시간: 평일(월~금) 09:00~18:00(점심시간 1시간 포함)
 - 추가근로: 근로시간 초과근무 시, 월 5시간 내에서 초과수당 지급

3. 응시 자격

● 기본요건

-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
- 공고일 전일 기준 “칠곡군 또는 경상북도 내 인접 시·군(구미시, 경산시, 김천시, 성주군, 군위군에 한함)”에 주민등록을 두고, 해당지역 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
-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소유자
- 남성의 경우,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66조(정년)에 해당하지 않고,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- 「칠곡군 공무원근로자 관리 규정」 제11조(채용결격사유)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

[채용 결격사유]

1.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,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※ [뒷면]에 계속

[채용 결격사유 (앞면에 이어 계속)]

- 7. 징계로 파면,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각각 5년,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8. 그 밖에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(전염병, 정신질환, 질병 등)

● 우대사항(※ 개별면접 시 반영)

-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한글속기 1, 2급 자격증 소지자
- 자동차 운전면허증(2종 보통 이상) 소지자
-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“칠곡군”에 주민등록을 두고,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
- 관련분야 6개월 이상 근무 경험자
※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며, “재직(경력)증명서 등 증빙서류”에는 근무기간, 담당업무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

4. 시험 방법

● 1차. 서류전형

- 제출서류를 토대로 자격요건 적격성 검사, 채용 결격사유·범죄경력 조회

● 2차. 개별면접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근무로로서의 자세, 성실성, 의사표현, 직무수행능력, 의회운영 기본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- 평가요소: 근무자세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사고의 건전성 및 주변 친화력, 근무분야 적합성 및 직무수행능력

[불합격 기준]

- 가산점 포함, 총점 60점 이하 득점자
-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‘D등급(미흡)’ 평정
-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‘D등급’ 평정

● 3차. 최종 결격사유 조회 및 신체검사

- 최종 결격사유 조회는 서류전형에서 조회한 조회결과로 대체 가능
- “전염병, 정신질환, 질병 등이 없는 자” 확인
※ 향후 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첨부

5. 시험 일정

● 주요일정

1차 시험(서류전형)		2차 시험(개별면접)		최종합격자 발표
원서접수	합격자 발표	시 험	합격자 발표	
'19.11.28.(목)~ '19.11.29.(금)	'19.12.6.(금) 예정	1차 시험(서류전형) 합격자 발표 시, 공고 또는 개별통보		

6.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: 2019. 11. 28.(목) ~ 11. 29.(금)
 - 평일 09:00~18:00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 내에만 접수 가능
- 장 소: 칠곡군의회 의회사무국(1층)
- 접수방법: 직접 방문접수, ※ 우편·팩스·인터넷·대리접수 불가
- 문의사항: 054) 979-6404

7. 제출 서류

- 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각 1부
(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(3×4cm)으로 부착)
- 주민등록 등본 1부
 - 등본 발급 시, 반드시 “¹⁾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[미포함], ²⁾교부대상자의 세대주·세대원·외국인 등의 이름[미포함], ³⁾주민등록번호 뒷자리[포함(본인)], ⁴⁾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[미포함], ⁵⁾동거인[미포함]”으로 발급, 기타 선택사항은 자유 선택하여 발급
- 채용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각 1부
-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1부
- 관련분야 재직(경력)증명서 각 1부
-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
 - ※ “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,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”는 [붙임 1~4]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

8. 합격자 발표

- 1차(서류전형) 합격자 발표: 2019. 12. 6.(금)
 - 2차 시험(개별면접)은 “1차 시험(서류전형)합격자 발표 시” 공고 또는 개별통보 예정
- 2차(개별면접) 및 최종 합격자 발표
 - 각 합격자 발표는 칠곡군의회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통보
 - 1차(서류전형) 및 2차(개별면접) 시험 결과,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합격자가 없을 시, 재공고하여 선발
 - ※ 이 경우, 기존 1·2차 시험 불합격한자는 불합격요건에 대한 명백한 변동/변경사항이 없는 한, 원서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

9. 채용서류 반환

● 채용서류 반환 안내

1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,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.
(반환청구 대상 채용서류는, 제출한 채용서류 “전부”에 해당함)
2.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 되지 못한 응시자는,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1개월간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.
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간주함.
3.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려는 응시자는 “채용서류 반환청구서[붙임 5]”를 작성하여 본 의회로 유선연락(☎ 054-979-6404) 후 팩스(054-973-0104)로 제출하면,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정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. 이 경우,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이 될 수 있으며, 팩스 신청(또는 제출)이 불가할 시 직접 방문 또는 전자메일 신청도 가능.
※ 전자메일 신청의 경우, 반환청구서 제출 전 유선연락(☎ 054-979-6404) 필수
4. 본 의회는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해, 위의 2항에서 고지한 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,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지체 없이(보관기간으로부터 5일 이내)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함
※ 개인정보 파기 이후, 채용서류 반환 청구 불가

10. 기타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.
-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,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, 원서접수일·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1·2차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.
- 최종 합격자가 임용 결격사유 또는 등록 포기 등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,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상세한 내용은 “칠곡군의회 의회사무국(☎054-979-6404)”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[붙임 1]

응 시 원 서

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, 만일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당해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, 채용계약 해지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반명함판 사 진 (3.5×4.5cm)	응 시 분 야	칠곡군의회 공무직근로자	응 시 번 호	미 기 재
	성 명	한글)	생 년 월 일	
한자)		연 락 처		
주 소			e-mail	
학 력	<input type="checkbox"/> 고등학교 졸업 이상 <input type="checkbox"/> 고등학교 졸업 미만		병 역 여 부	<input type="checkbox"/> 군필 <input type="checkbox"/> 미필 <input type="checkbox"/> 면제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주요경력				
면허증·자격증				

응 시 표				
반명함판 사 진 (3.5×4.5cm)	응 시 분 야	칠곡군의회 공무직근로자	응 시 번 호	미 기 재
	성 명		생 년 월 일	
2019년 월 일				

[붙임 2]

이 력 서

인적사항

성 명	한 글		생년월일	(만 세)
	한 자		성 별	
주 소			연 락 처	
			e-mail	
군필여부			면제사유	

경력사항

부터	까지	직장명	직위	담 당 업 무 내 용

- ※ ① 근무한 모든 경력 기재하되, 재직(경력)증명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.
- ② 경력(재직) 증명서에 표기된 연월(일)로 작성하시고 담당 업무는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.
- ③ 기타 용지가 부족할 시는 추가로 작성가능(증빙자료는 별첨으로 제출)

자 격 증

자격증명	등록번호	취득일	시행기관

※ 채용 관련분야 자격증은 증빙 자료로 별도 제출

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.

2019년 월 일

성 명 : (인)

[붙임 5]

채용서류 반환 청구서

접수번호	접수일
------	-----

청 구 인	성명	수험번호
주 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 환 요 구 서 류		
<p>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, 제3조,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19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>칠곡군의회 의장 귀하</p>		
공지사항		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에 따라 신청인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이후 1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반환요구서류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2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 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3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		